

안전번호	제25-16호 (제461차 이사회)
보고년월일	2025. 11. 21.

보
고
사
항

전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

제 출 자	주 택 도 시 보 증 공 사 기획조정실장 김 용 한
제출년월일	2025. 11. 21.

1. 제460차 이사회 개최결과

가. 회의일시 : 2025. 10. 31.(금) 11:00

나. 회의장소 : 여의도 태흥빌딩 7층 1회의실

다. 참여현황 : 이사 10명 중 8명 참석

라. 회의결과 : 보고사항 1건 원안접수, 의결사항 1건 원안의결

구분	안건번호	안건명	회의결과
보고 사항	제25-15호	전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	원안접수
의결 사항	제25-39호	중장기 경영목표안	원안의결

마. 주요 경영제언 및 조치현황

제언사항	조치현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직원의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매입 필요성 검토 요청 [심오택, 국경복, 김성수, 윤호진 이사]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정 근무면적 수준, 조직·인력 변화 및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으로, '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·보고 예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간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연체 증가 관련하여 내부적 점검 필요 [국경복 이사]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주체·지역·주택유형별 세분화 분석을 통한 연체 발생 요인 파악, 부실차주 정상화·회수 등 관리 현황 점검 추진

2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및 규정 : 별첨

나. 조치사항 : 이사회 회의록 및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공시
(공사 홈페이지 및 통합공시시스템)

【별첨】

관련 법령 및 규정

□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

제61조(이사회 회의록 작성) ①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, 장소, 참석자 명단,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,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□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

제34조(이사회 회의록 공개) 공공기관 이사회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 홈페이지와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고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□ 이사회규정

제8조 (의결 및 보고사항) ① ~ ③ (생략)

④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국정감사,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회계 감사와 동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
2.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(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한다)
3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
4.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나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